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해운대구(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주)청도(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계약상대자”에게 대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익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대행구역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품(소형 폐가전제품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지역 및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1일 300kg미만 배출)은 다음과 같다.

- ▶ 우1·3동 일반주택(공동주택 중 동원비스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두산위브더제니스, 아이파크, 경남마리나 등 일부 포함) 및 소규모 사업장
- ▶ 우2동(두산센텀위브 제외), 반여2·3동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
- ▶ 재송1·2동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재송1동 중 해운대로 아래 일반주택 및 더샵센텀스타, 센텀e편한세상, 센텀피오레 등 공동주택 제외), 소규모 사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구역은 “계약자”가 시책변경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선 추진 등으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자”의 지시에 의해 임의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대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재활용품의 경우 품목별 분류 포함) 작업을 책임지고 관계 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구역 내 배출량,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 등 변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지정된 처리시설〔일반쓰레기-소각장(해운대, 부산이앤이, 명지) 또는 매립장(생곡), 음식물-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구청 선별장 또는 구 지정 처리업체〕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및 대행구역내 배출량,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 등 변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지역도급제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은 2021.1.1 ~ 2021.12.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재계약 여부는 환경부 지침 또는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및 “계약자”的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재계약이나 연장 등 향후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쌍방이 별다른 통지 없이 수거지역에 대한 신규계약,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次期)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5조(대행사업비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매월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2021년도 계약금액은 \_\_\_\_\_ 원으로 하고 “계약자”는 계약금 총액을 월정액으로 나누어 “계약상대자”的 요청에 따라 월별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조기집행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대행금액으로 인력고용, 장비운영 등 위탁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서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계약상대자”的 귀책사유로 “계약자”로부터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 후 계약보증금을 무이자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的 의무를

“계약자”가 대행한 경우 그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의 개요
  2. 인력 및 장비 등 현황[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운전원·종사원 인적사항 (재직현황, 비상연락체계도 포함) 및 배치현황, 투입차량 개요 (자동차 등록원부 포함)와 차량번호, 중간집적소 및 수거 보조장비(암률박스 등) 배치,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품목별 수집·운반 절차와 방법, 미 수거된 생활폐기물 수거 포함)
  4. 과업수행 청소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예비차량에 관한 사항
  6. 종사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복리후생비 지급 계획, 안전·위생 대책, 휴게실 현황 포함)
  7. 민원처리 대책 및 재해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8.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 [별표2]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원가산정금액」에 의함)
- ② “계약상대자”는 120리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처우(소득분배) 계약서류 등을 본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20리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계약서류에는 업체 종사자 대표 또는 노조대표 등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① “계약상대자”的 사무실은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502호(우동, 국제빌딩)이며, 차고지는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460 외 1필지 및 해운대구 석대동 316번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차고지와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 이외의 영업과는 구분(회계처리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청소차량 등을 차고지 외에 주

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차고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제9조(청소차량의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수거시간을 준수하고, 발생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청소 전용차량(밀폐식 압축, 압착, 암롤, 덤프, 음식물 전용차량 등) 및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장비의 고장,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차량과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중간수집통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청결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보관용기가 수거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쓰레기통 교체 등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수집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량보험가입 및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만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황을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일반주택은 완전문전수거방식으로, 공동주택은 배출장소 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계약자”가 지정한 요일과 시간대별로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며 당일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당일 수집·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외 기동수거반을 편성·운영하여 미수거로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종량제봉투미사용 쓰레기배출,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에 대하여는 안내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으로 주민을 계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120리터를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에 대해 수거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구역을 위탁받은 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거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운행노선 등 수집·운반 관련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대행업무 수행 사항을 매일 확인·점검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정하는 보고서를 수수료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 지원하고 종사원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여름철에는 심야시간대(02:00 ~ 05:00) 작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작업하는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의 지급내역은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되,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이체 확인서와 같이 제출하고, 복리후생비의 지급 내역은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직접노무비는 계약 만료 시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용·퇴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동내역을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한 의무적 가입 대상의 인적 보험료는 반드시 가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지급내역은 반기별로 그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속 종사자에게 대민

봉사,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나 지도·감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은 대행업체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 노조와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장 및 수거지역 관할 동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여, 효율적인 대행사업 운영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대표자, 임원,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는 불법·허위·부당한 행위로 대행료를 지급받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후에도 적법하게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계약자”的 환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2조(대행업무 지도·감독 등)** ① “계약자” 및 대행지역 관할 동장은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的 대행업무 처리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사업의 과업수행에 대하여 적정인원의 작업감독자를 두어 원활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무의 대리수행)**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체결이후 계약불 이행 또는 시행 과정상 소홀함 등으로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구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的 대행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계약보증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감독)** ① “계약자”는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대행구역 내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동 조례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대행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를 연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감사결과 대행업무 처리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평가나 감사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조사 또는 지시 및 관련 서류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평가나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붙임 “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 등 세부적용 지침”에서 정한 위반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6개월간 벌점 누계를 합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당해 월 수수료 지급분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벌 점	금 액	비 고
40점 초과 시	100만원	
70점 초과 시	200만원	
100점 초과 시	300만원	

⑥ 2년간 누적된 벌점이 200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제15조(계약해지, 대행구역의 축소 및 대행수수료 감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지, 대행구역의 축소 조정 및 대행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계약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계약자”가 공익상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자”의 지시, 감독에 불응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본 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금지행위 및 조치)** ① 수집·운반업자가 아닌 일반주민이 수집하여 특정배출지점에 운반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못한다.

②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체계인 문전수거제에서 대행업체 종사원 중 주민

들의 쓰레기 배출·수거 등에 도움을 주고 일체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사수거금지) 사수거자의 수거쓰레기는 수집·운반하지 못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종업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위약금액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내 대행업체 종사원이 임의로 재활용품을 처분·매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600만원의 위약금액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구의 대행구역 조정 및 결정)** 업체별 대행구역은 구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광역처리시설 반입단속기준 위반 벌점 부과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벌점기준 이상으로 위반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수거물량과 처리물량을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자”는 물량차이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 등은 당해 월 수수료 지급분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제세공과금)** 본 계약으로 “계약자”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수탁권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대행 받은 사업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근로자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해고 또

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대행구역 또는 사업장을 승계하는 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할 수 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친절봉사,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등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상상황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샤워실(목욕비 대체지급가능),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청소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고 “계약자”가 행하는 감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수집·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안전교육 실시 사항 등

**제23조(재난 및 비상상황 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지원)**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 외 다른 지역에서 재해나 타 대행업체의 파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자”가 지정한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토록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추후 정산 지급한다.

③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생활폐기물을 신속 처리하여 도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계약자”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2021. 1. 1.~2021. 12. 31.까지로 한다.

**제26조(부칙)**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계약자”에게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법규와 조례 등의 개정, 쓰레기처리시설의 이전, 대행구역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후에 계약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③ “계약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일

“계약자”(계약담당공무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인)

“계약상대자”(주. 청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502호(우동, 국제빌딩)  
대표이사 정경현 (인)

##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 인건비(직접노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및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별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주) 청도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 조건 이행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일

주 소 :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502호(우동, 국제빌딩)  
회사명 : (주) 청도  
대표자 : 정 경 현 (인)

# 2021년 해운대구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 대행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1.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구역조정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구에서 산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물량 결과에 따라 처리물량이 수집·운반물량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비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물량산정 방법 : ①+②+③+④

① 단독주택 : [(3ℓ×납부필증 회수량)+(5ℓ×납부필증 회수량)] × 0.8(kg환산계수)

② 공동주택 물량 : (공동부과분ℓ × 0.8(kg환산계수)) + RFID 물량

③ 소규모식당 : (120ℓ×납부필증 회수량) × 0.8(kg환산계수)

④ 수집운반 물량 합계분(①+②+③) × 0.01 (1% 오차범위 감안)

2020년 12월 일

주 소 :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502호(우동, 국제빌딩)

회사명 : (주)청도

대표자 : 정 경 현 (인)

## 【별표 1】

### 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 등 세부적용 지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계약위반에 따른 위반횟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회 추가시마다 2차, 3차 위반으로 보며, 단 해당사유 조사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 다.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지는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 라. 본 세부적용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을 적용한다.
- 마.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청소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개별 벌점기준에서 정하는 벌점부과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의한다.

## 2. 개별기준

분야	위반사항	처분기준(별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생활쓰레기수거	① 생활쓰레기 수거를 누락시킨 경우	2점	<u>4점</u>	<u>8점</u>
	② 생활쓰레기 중간 수집장소 청소 불량			
	③ 폐기물 상차작업 후 뒷마무리를 불성실하게 한 때			
	④ 차량 이동시 적재물이나 침출수를 도로에 떨어뜨리는 경우			
	⑤ 재활용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처리를 지연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안전 및 차량관리	⑥ 작업 시 안전수칙을 위반한 때	2점	<u>4점</u>	<u>8점</u>
	⑦ 차량을 지정된 장소 외 노상에 방치 한 때			
	⑧ 차량 청소상태 불량			
	⑨ 작업 중 교통법규 또는 교통신호 위반			
종사원관리	⑩ 종사원의 금품수수 및 수거한 재활용품판매 등 부조리 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5점	10점	20점
	⑪ 종사원의 주민에 대한 불친절 행위	2점	<u>4점</u>	<u>8점</u>
	⑫ 종사원 복무위반(근무복 미착용 등)			
행정분야	⑬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점	10점	20점
	⑭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대행권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계약해지	-	-
	⑮ 보고 또는 자료를 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점	10점	20점
	⑯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점	10점	20점
	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반복해서 제기되는 경우	5점	10점	20점
	⑱ 광역처리시설 단속에 의한 반입정지	해당별점	해당별점	해당별점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부산시 조례, 해운대구 조례 등